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1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정일영·고용진·이형석

허종식 · 김교흥 · 조정식

이성만 · 송영길 · 윤후덕

양향자 • 박상혁 • 맹성규

임종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현행 리쇼어링 기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반쪽짜리 경제자유구역이 됨.

따라서 리쇼어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수도권의 집적된 인적, 물적 자원과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마련과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4조의24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을 "2028년"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 --2028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제외하 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 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예외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 로 한다-----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